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1
----------	-----

제출년월일 : 2001. 11. 16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총전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첨 부 : 1.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⑨(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90일</u>-----</p> <p>-----</p> <p>③~⑨(현행과 같음)</p>

第10編 地方制度 第3章 地方公務員 地方公務員法

록 要求하거나, 政治的 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 利益 또는 不利益을 約束하여 서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볼일 수 있다.

(전문개정 73·3·12)

第59條 (委任規定)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66·4·30>

第 7 章 身分保障

第60條 (身分保障의 原則) 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 또는 이 法이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級公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第61條 (當然退職) 公務員이 第31條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62條 (職權免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改正 66·4·30, 73·3·12, 81·4·20, 91·5·31, 98·9·19>

1. 및 2. 削除 <91·5·31>

3. 地方自治團體의 罷置·分合 및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算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罷職 또는 過員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 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증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第6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中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담당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남북한의 왕래 및 경제협력의 증가 등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의 여진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왕래절차 및 방문증명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 6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남북한을 방문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나. 북한방문증명서증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가 귀환·방북시마다 방문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하는 불편을 해소함(영 제17조제1항).
- 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그 밖의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의2 신설). 라.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시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북한당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함(영 제34조제1항제4호).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김 대 중

2001년10월31일

-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 근식

◎대통령령 제17399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편 총무사회 제1장 자치행정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등에 '용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0.2.18>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3.5>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 4. 30>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8>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2.18>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1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설 1996.3.5>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수 2)

제 362 호

제 천 시 보

2001. 10. 12(금)

제천시 고시 제2001-611호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래 명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개정취지 :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② 임신중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 ----- 90일-----.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을 2001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고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640-6102, 6106)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